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성 의원)

의안 번호	331
----------	-----

발의연월일: 2024년 10월 8일

발 의 자: 김광성 의원

찬 성 자: 남진삼, 김성기, 이은미 의원

1. 제안이유

대지 안에 조경 설치가 어려운 농·어업 관련 시설에 조경 설치 의무를 제외하여 효율적으로 관련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지 안 조경 제외 대상에 다음의 시설 추가(안 제16조)
 - 농·어업을 위한 주택·창고 또는 농기계수리센터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입법예고 : 2024. 9. 24. ~ 2024. 10. 2.(7일간), 의견 없음

라.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4. 9. 14. ~ 2024. 9. 23.(10일간), 아래표 참조

조례안(의회안)	수정안	사유	의회 의견
<p>제16조 (대지의 조정)③항 3.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지법」 제2조에서 정의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창고 또는 농기계 수리센터와 이와 유사한 건축물</p>	<p>3.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창고 또는 농기계 수리센터와 이와 유사한 건축물</p>	<p>○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은 어느 특정한 구역을 지정하기에 곤란하여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p> <p>○ 「농지법」 제2조에서 정의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삭제하여 대상 범위 확대 운영</p>	<p>[수정안 전부 수용] 3.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창고 또는 농기계 수리센터와 이와 유사한 건축물</p>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창고 또는 농기계 수리센터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 (대지의 조경) ①·② (생략)</p> <p>③ 영 제27조제1항 제5호·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p> <p>1.·2. (생략)</p> <p><u><신 설></u></p> <p>3. ~ 6. (생략)</p>	<p>제16조 (대지의 조경)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창고 또는 농기계 수리센터와 이와 유사한 건축물</u></p> <p>4. ~ 7.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p>

[관계법령]

< 건축법 >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건축법 시행령 >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비용추계서 미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침부 사유

-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 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도시안전국 허가과장 황 재 국
연락처	(033) 330 - 2100